# 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 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32)

Special

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제조(343000)	정기	700억원대	지방청

# Tex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조사법인은 자동차용 인테리어 조명 개발 및 생산법인(2차 벤더사)으로 Text 현□, 기■ 등 20여개 이상의 차종 도어라이트 및 실내조명 부품 제조법인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연 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부당행위계산부인	11301	끼워넣기를 통한 특수관계인 재화 및 부동산 고가매입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가차이분 자료확보)
2	업무무관 용역대가	11203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용역대가 손금불산입
(2)	ᆸㅜㅜ선 중식대/F 	20403	업무무관 지출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3)	증여의제 및 증여세	50207	비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 증여의제로 과세
	중에 기세 옷 중에게	50401	사주일가에 증여한 주식가액 저가분 경정
4	개발비 자산화	10901	일시보관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 확보로 즉시상각의제 시부인
(5)	해외매출채권 지연	18004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 정상가격 조정
6	기술사용료	18004	국외특수관계인 기술사용료 미수취 정상가격 조정
7	무환수출	11307	국외특수관계인 무환수출 대가 미수취
8	감가상각비	10901	소모품비 중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의제 시부인
9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1150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부당세액공제 적출
10	세액공제 (고용증대 등)	11505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부당세액공제 적출

Text (다양한 항목 적출사례) 비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증여세), 업무무관에 따른 Text 대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 등 다양한

Text 세목 및 항목에 대해 과세하고 모두 불복없이 00억원 현금 징수한 조사

# Tex 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①

❖ 부당행위계산부인 (항목코드: 11301)

특수관계인 재화 및 부동산 고가매입액 부당행위계산부인

###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비특수관계인) 조사법인은 비특수관계인 ㈜스니으로부터 해당기간('20.4월~'22.8월)

Text 에만 제조 부품(light string)을 매입거래하고, '22.9월 ㈜스ㄴ이 보유한 부동산을

Text 양수한 이후 재화거래를 포함한 거래내역이 전혀 없음

Text - ㈜스ㄴ 매출비중의 대부분이 조사법인과의 거래로 단기간 재화거래 이후 고액의

Text 부동산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사실을 통해 재화거래 실거래 여부 불분명

## Text < (주)ㅅㄴ 매출액 및 매출비중 >

(백만원, %)

Table	구 분		총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전 ㅊ	1	**,*57	*41	*,*57	*,*54	**,*56	*49
	매출액	조사법인	인	**,*44	_	*,*00	*,*73	**,*71	_
		(거래비중	중)	(83.9)	(0.0)	(84.5)	(96.1)	(91.6)	(0.0)

### Text < (주)ㅅㄴ 기본사항 >

Special

법 인 명	설립일	대 표자(취임일)		업 종	주 주	
㈜人 ㄴ	'18.11.22.	임人ㅎ	('20.5.19.)	제조/자동차부품	임ㅅㅎ 42%, 기타 58%	

Text ○ (끼워넣기) ㈜스ㄴ의 주요 매입처 ㅈㅇ기업(매입비중 94%)은 '20.3월까지는

Text 조사법인과 직접 거래한 업체로 ㈜스ㄴ과의 거래('20.4월~'22.8월)가 종료된

Text 22.9월부터는 중간매개체없이 다시 조사법인과 직접 거래한다는 점,

Text 거래품목은 ㈜스ㄴ여부와 상관없이 'light string'로 동일하다는 점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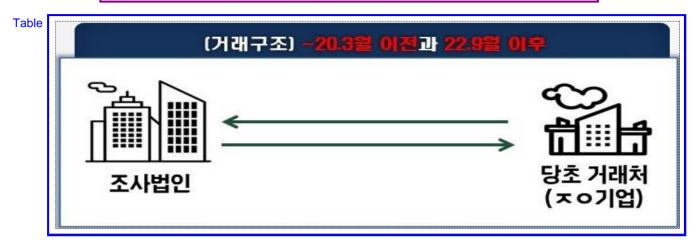
Text 아래와 같이 끼워넣기 혐의대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착안함

### Text < 세금계산서 거래흐름 >

Table	~'20.3.31.	'20.4.30.~'22.8.31.	'22.9.30. <i>~</i>	
	조사법인 ← ㅈㅇ기업	조사법인 ← ㈜人ㄴ ← ㅈㅇ기업	조사법인 ← ㅈㅇ기업	

Text <mark>- (재화거래)</mark> ㈜스ㄴ과의 단기간 거래의 적정 여부에 대해 부당행위 및 실거래 Text <mark>여부 검토</mark>

Text < (~'20.3월과 '22.9월~) 당초 거래처와의 재화거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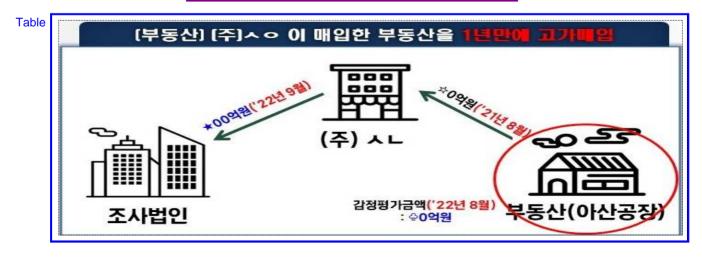


Text < ('20.4월~'22.8월) 끼워넣기 혐의 재화거래 >



Text - (부동산거래) ㈜스ㄴ이 '21.8월에 구매한 아산공장(부동산)을 거의 1년 만에 Text 2배 가까운 ★00억원에 매입한 사실을 통해 부당행위여부 검토

Text < ('22.9월) ㈜人 L 과의 부동산거래 >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 (특수관계인) 외관상 특수관계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법인의 경영에

Text 사실상 영향령을 행사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음

### Table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정의】

법인세법 제2조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으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Text ○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특수 Text 관계인과의 거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

##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특수관계인) ㈜스ㄴ 대표이사 임스ㅎ는 조사법인의 주식을 보유(2,609주, 1.74%)

Text 하였던 자이며, 주주들의 배우자는 모두 조사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직원으로

Text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Text <(주)人ㄴ 주주 및 배우자 현황>

Table	ᅎᅎᆏ	죄ᄉ	T H O	ull O Tl	비 고(조사 박	법인 관련)
	주 주 명	주식 수	지 분 율	배우자	주 식 취 득 시 점	현 재
	임人ㅎ	*8,000	42.50%	정ㅁㅎ	_	주주(2.51%)
	김ㄱㅇ	*2,000	20.00%	최ㅈㄱ	전무이사	경주본부 전무
	박ㅇㄱ	*0,000	12.50%	이ㅂㅈ	영업원가 팀장	대표이사
	오ㅇㅇ	*0,000	12.50%	이ㄱㅎ	경영기획 팀장	경영지원실 이사
	김ㅎㅇ	*0,000	6.25%	전人ㄱ	기술연구소 팀장	기술연구소 이사
	박ㅎㄱ	*0,000	6.25%	최ㅈㄷ	제조본부 팀장	퇴사

Text - (주식처분) ㈜스ㄴ 대표자 임스ㅎ는 조사법인의 주식(\*,\*09주, 1.74%)을

Text 20.4.8. 자매인 임ㅈㅎ에게 모두 양도한 이후 조사법인과의 재화 매입거래가

Text 발생('20.4.30.)되었다는 점에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회피한 혐의로 확인

# Text < (주)소닉 매출액 및 매출비중 >

(백만원, %)

Table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자	① 주식수	② 단 가	양도가액(①×②)
	임人ㅎ	임ㅈㅎ(자매)	'20.4.8.	*,*09	**,*00원	*1

Text ○ (재화거래) 거래처 변경 사유는 'light string'을 당초 ㅈㅇ기업에서 매입하

Text 였으나, 스트링 단품에 캡을 씌우는 추가 공정이 필요하여 이를 ㈜스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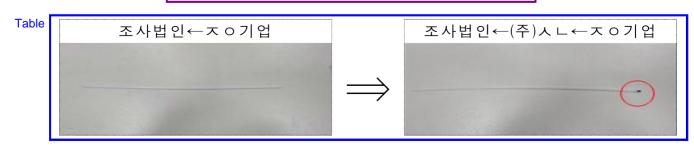
Text 수행하고 추가 공정 완료된 부품을 매입하였다고 소명

Text - ㈜스<u>니 대표이사도 인터뷰에서 ㈜스니의 근무 인력관리, ㅈㅇ기업으로부터의</u>

Text 매입단가 조정 등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운송내역 등 확인

Text 된다는 점에서 실거래를 부인할 근거가 부족함(금융조회 및 일시보관 추가시행)

# Text < 거래처 변경 전·후 스트링 매입사진 >



Text | (부동산거래) 조사법인의 아산공장은 특수관계인 ㈜스니으로부터

★00억원에 양수한 자산으로, 매매 당시 감정평가액 &6억원(시가)

Text 고가매입(min[시가 5%, 3억원] 초과)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 Text < 조사법인의 아산공장 매매내액

(백만원)

**Table** 

е	부동산소재지	구분	거래일자 (감정일자)	거래가액 (감정가액)	거래법인	비고
	충남 아산시	㈜人ㄴ 취득가액	'21. 8. 17.	☆,*00	ㅍㅇ플러스(주)	_
	人大면 OL리	①매매가액	'22. 9. 30.	<b>★</b> *,*00	㈜人 ㄴ	특수관계인
	**외	②감정가액	'22. 8. 26.	ക,∗12	_	_
	(아산공장)	차이(①-②)	_	*,*788	_	_

조사법인은 '23.5.11. 감정받은 가액으로 소명하여 거래가액

Text 없다고 매매일자('22.9.30.)와 6개월 차이로 주장하였으나. 이상 시가불인정하고

계약서류 Text 별도의 감평서류('22.8.26.)를 확보해

**Table** \* **감정일자('23.5.11.)** / 감정가액(★17억원) | \* **감정일자('22.8.26.**) / 감정가액(&6억원) 주중암갈점평가법인 중남지시 날짜 (부동산, 기계기구) 감정평가표



#### Text 나. 조사법인 및 주장 과세논리

Text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부동산 감정가액 착오는 인정하지만, Text 재화거래는 기■ 단가 지침에 의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

Text ○ (조사팀 과세논리) 단가 조정을 통해 ㈜스ㄴ에게 이익 분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익잉여금이 설명되지 않으므로, 누적됨

Text 필요성에 대해 주장함

# Text 다. 핵심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조사법인 미협조) 조사법인 임원 및 직원들의 배우자로 특수관계인 은닉을

Text 통해 경영권 실제 지배에 따른 이익 분여 혐의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매입

Text 단가 적정 여부를 위해 정기조사임에 시가 등 관련자료 미협조로 금융조회

Text 및 일시보관 시행

용품 IX2 SIMI

Tab

Text - (금융조회) 금융조회를 통해 특이사항은 없고 오히려 거래금액에 대한 대가

Text 수령 등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가공거래 아님이 확인됨

Text - (일시보관) 대표자, 회계담당자 및 구매부서 담당자를 일시보관한 결과, 내부

Text 조직도상 계열법인으로 관리하여 특수관계임이 확인되고, 'light string' 월별 단기

Text 자료를 통해 매입처 변경에 따른 단가 변동이 시가를 초과하여 이익분여한 것

Text 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

LIGHT STRING (L 108.5mm)

### Text < 월별 단가 자료, 일시보관 >

529

Table			<b>倒入し</b>							ㅈㅇ기업			
	차종 🔻	품명	1월 단 🕶	2월 단 🗸	3월 단 🗸	4월 단 🕶	5월 단 🗸	6월 단 +	7월 단 🕶	8월 단 🗸	9월 단 🕶	10월 단 🗸	11월 단
	HZG DRGA	LIGHTSTRING(380)	2,235	2,235	2,235	2,235	2,235	2,235	2,235	2,235	1,368	1,368	1,368
	DF-PF IPML LHD	LIGHT STRING 101MM	495	495	495	495	495	495	495	495	343	343	343

529

529

529

CK PE MFML 629 629 629 LIGHT STRING C 130.5mm 629 629 629 629 629 442 442 442 442 187 42.31% RS4 IPMI LIGHT STRING LH (L=142MM) 681 681 681 681 483 483 ○ (적출금액) 특수관계인 ㈜스니으로부터 원재료(\*,\*22백만원) 및 부동산(\*,\*87백만원)

529

529

529

529

Text 고가매입에 따른 '20~'22년 부당행위계산부인액 \*,\*11백만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Text 22년 부동산 미양도상태로 \*,\*88백만원 손금산입(유보), 고가매입에 따른 취득가액

Text 변경으로 '22년 감가상각비 조정 \*45백만원 익금산입(유보)

### Text < 특수관계인 ㈜人ㄴ과의 고가매입 총금액 >

(백마워)

12월 단 1,368 343

367

367

367

367

152

162

44.31%

44.14%

						( ¬ 🗀 🗀 /
ole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고가매입액	*,*11	*14	*9	*,*88	_
	토 지	△ *,*88	_	_	△ *,*88	_
	감가상각비	*45	_	_	*11	*34
	합 계	*,68	*14	*9	*,*11	*34

# Text <mark>라. 분명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mark>

Text ○ 내부자료 수집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

Text 논리를 제시하여, 올바른 세법적용 안내가 더 큰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ext 국세청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여 조사법인이 직접

Text 확인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적출**②

# ❖ 용역대가과다지급 (항목코드: 11203, 20403) 특수관계인 용역대가 과다지급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 Text **1. 조**사착아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O (용역거래) 조사법인은 차량용 무드램프와 관련된 설계개발을 특수관계인

Text 시◇◇이노◆◆◆(유)에게 의뢰하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Text < 시◇◇이노◆◆◆(유) 매출액 및 매출비중 >

(백만원, %)

**Table** 

е	구 분		총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전	체	*,*31	*39	*40	*,*98	*22	*,*32
매 출	를 액	조사	법 인	*,*69	*25	*68	*,*29	*19	*28
		(거래	비중)	(56.3)	(95.8)	(92.3)	(94.2)	(99.6)	(5.3)

<sup>Text</sup> - 특수관계인 시◇◇이노◆◆◆(유)는 '18.11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매출의

Text 90% 이상을 조사법인에 의존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실제 연구활동 여부

Text 및 대가 적정 여부 검토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과의 실제 용역업무 수행 여부 및 용역대가 Text 지급 적정 여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특수관계인) 조사법인에게서 용역받은 램프 설계개발을 '19.10월 ~ '22.8월까지 Text 수행하면서 받은 용역대가가 매출의 대부분으로 확인

# Text < 시◇◇이노◆◆◆(유) 기본사항 >

Special

법 인 명	대표자(외국인)	설립일	업 종*	주 주	
시 (유)	크리스☆☆	'18. 11. 1.	제 조/ 자동차부품	시◇◇인터◎◎◎ 100%(미국법인)	

Text \* 업종 : '19.11.12. 서<u>비스/자동차 부품개발 부업종으로 추가됨</u>

# Text <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 거래흐름 >

Table	~'19.10.31.	'19.10.31.~'22.8.31.	'22.9.30.~
	매출 없음	설계개발비용 (조사법인)	'23년 이후 영세율 매출만 발생 (그 외 매출항목 없음)

Text ○ (연구용역) '19.10월부터 특수관계인 시◇◇이노◆◆◆(유)에서 근무한 직원

Text 들의 이전 근무지를 확인한 결과,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할 정도의 경력자는

Text 없어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22.8월 모든 직원 퇴사함

Table

### [조사 방법]

① 예비조사 : 연구용역 구성원 및 이직 내역 검토

② 현장방문 : 사업장 소재지 방문 및 근무 당시 연구원들의 활동일지

③ 인터뷰 : 근무 당시 연구원 인터뷰 및 제출자료 검증(핵심 증거자료)

Text - (예비조사) 근로자 김ㅁㅅ와 같이 일부 근로자의 경우 조사법인(~'19.10월) →

Text 시◇◇이노◆◆◆(유)('19.10월~'22.8월) → 조사법인('22.9월~) 순으로 근무한

Text 이력이 확인되며, 복직시 연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중

Text - (현장방문) 용역기간('19.10월 ~'22.8월) 설계개발 용역 수행여부 확인을 위해

Text 시◇◇이노◆◆◆(유)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현재는 서울

Text 사무소만 운영하여 공실 상태로, 관리주체도 조사법인이 아니라서 사무실

Text 내방이 안되지만 외관상으로도 공실로 확인됨

# Text < (조사기간 방문) 시◇◇이노◆◆◆(유) 사업장 소재지 >

Table



Text - 당시 용역보고서를 미제출하는 등 비협조상태이나, 용역제공 기간('19.10월~

Text (22.8월) 지도앱에서와 같이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Text 용역보고서 미제출만으로 실제 근무여부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Text < ('20년, '21년 지도앱) 시◇◇이노◆◆◆(유) 사업장 소재지 >

Table





Text ○ **(인터뷰)** 시◇◇이노◆◆◆(유)에서 용역업무를 수행 후 퇴사('22.8월)하여 현재

Text 조사법인에서 근무중인 김ㅁㅅ 영업부장 인터뷰를 통해, 개발업무 전담자와

Text 달리 모회사의 영업업무도 겸임하는 직원들은 5:5 비율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Text 진술하여 업무일지(다른 직원 포함)를 통해 진술의 적정함을 검증함

### Text < 영업원가 부장 김ㅁㅅ 인터뷰 발췌 >

Table 문 이직한 직원 외에 이노■■■ 직원들을 알고 계신가요? 답 일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문 그분들은 무슨 업무를 하였나요?

답 시 업무와 이노 점점 업무를 중첩해서 수행하였습니다.

문 이노**르크**(미국) 일과 시**르크** 업무의 정도는 어느정도였나요? 답 반반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 Text 나. 조사법인 주장 및 과세논리

○ **(조사법인 주장)** 제3자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1인당 6,400백원)을 기준으로 「ext 시◇◇이노◆◆◆(유)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1인당으로 산출하면 6,400백만원

Text 이하로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강경하게 주장

**Table** WORKING LOAD and COST 05월 06월 07월 2 2 ENGINEER (A) 2 무드라이트 인건비 ₩6,400,000 ₩12.800.000 구조 설계 ₩12,800,000 ₩12,800,000 인건비 및 대수 라이선스 라이선스 비용 비용 ₩1,2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SUB-TOTAL ₩15,200,000 W15,200,000 ₩15,200,000

Text ○ **(조사팀 과세논리)** 조사법인이 제시한 제3자 연구용역 대가를 검증하기

Text 위해서는 비교가능한 여러 업체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는 비교가능한

Text 여러 업체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시가초과에 따른 과세여부 판단이 아닌,

Text 실제 근무자 인터뷰에서 확인한 주요업무에 따른 근무비율(50%)로 재해석

Text 하여 아래와 같이 안분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도 판단함

### Text 다. 핵심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제출자료) 조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시◇◇이노◆◆◆(유)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지 않았다며(제3자 6,400백만원, 조사법인 5,882백만원)

Text 아래와 같이 월별·인별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주장

**Table** ● (조사법인) 제3자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로 1인당 6,400,000원 증빙 제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익분여 근무월 용역대가 우트 미 송ㅎㅊ 김미스 ±0,588,235 12 배스조 최소호 김이스 ±0,588,235 ±0,588,235 ☆0,588,235 황ㅇㅈ 박ㅈㄱ 외국인 ±0,588,235 ±0,588,235 12 진 ㅇㄹ 이 ㅎ ㅈ 이 ㄱ ㅇ 조 ㅇ ㅎ 11 ☆2,941,176 현지하

Text - (재해석) 조사법인 제출한 근무자들의 주요업무를 추가로 확인한 후 김ㅁㅅ

Text 인터뷰에 근거하여 개발담당자를 제외한 직원들의 업무비중에 따라 용역대기

Text 대상자를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 재정리하면,

Text 사무와 회계담당자는 100%, 개발·영업 겸임자 50%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Text 것으로 쟁점사항을 부당행위에 따른 시가초과 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없이

Text 대가를 지급한 비용으로 재해석하여 과세

Text ○ (적출금액) 조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시◇◇이노◆◆◆(유)에 조사법인의 업무

Text 수행과 관련없이 과다지급한 '19~'22년 용역대가 \*14백만원 손금불산입(기타

Text 사외유출)하고 추가로 '20~'22년 부가세 \*6백만원도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함

(백만원)

Table '20년 '21년 '22년 구 분 합계 '19년 용역대가 법인세 \*50 \*69 \*14 \*54 \*41 (손금불산입) 용역대가 부가가치세 \*5 \*7 \*6 \*4 (매입세액불공제)

### Text 다. 명백한 과세근거로 성공적 처분유지

업무무관 관련비용에 Text 부당행위에 따른 시가초과에 대한 쟁점과는 달리 조사청의 Text 반반이 과세근거에 조사법인은 타당성을 대한 합리적 불가하여 대해서는 과세 Text 바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시종결 없이 현금 납부함

# 적출③

# ❖ 증여세 (항목코드:50207, 50401) 비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 증여의제 및 사주일가 증여세 과소신고

# Text **1. 조사착안**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우ㅈㅎ은 ㈜서■오토△△(1차 벤더)으로부터 주당 Text \*\*,300원에 주식 7,5\*\*주를 양수하고, 양수한 7,5\*\*주 중 6,\*\*\*주를 양수한 단가(@\*\*,300원)로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2,\*\*\*주씩 증여함

# Text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내역 >

								(수, %)
Table		구 분	기 초	양도	양수	증 여	수증	기 말
	소 계		***,*87	15,***	15,***	6,***	6,***	***,*93
		㈜서■오토△△ (1차 벤더)	15,***	15,***	_	_	_	_
	①번 거래	시 <b>○○○○○○○○○○○○○○○○○○○○○○○○○○○○○○○○○○○○</b>	**,*17	L	<u>7,5**</u>	_		**,*42
		우 ㅈ ㅎ (대 표 이 사)	**,*20		<u>7,5**</u>	6,***	1	**,*45
		박ㅁ人 (배우자)	-	-	1		2,***	2,***
	②번 거래	우人ㅇ (자녀)	_	-	-		2,***	2,***
		우人ㅂ (자녀)	-	-	-		2,***	2,***

Text - (주당가액) 대표이사 우ㅈㅎ이 양수한 주식을 동일한 단가로 배우자와 자녀 Text 2명에서 증여한 증여가액은 49백만원으로 확인

Text 대표이사가 주식을 양수하고 즉시 증여한 거래는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고려하여 증여재산공제(50백만원)에 맞게 주식 단가를 임의로 지정한 Text 혐의가 있어 주식가액 적정여부 불분명에 따라 착안함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도 정당한 사유없고 시가와 비교하여 Text 저가거래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가능함

### Table 법령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Table 법령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예비조사)** '20.4.3. 대표이사 우ㅈㅎ은 조사법인의 특수관계인 ㈜서■

Text 오토△△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7,5\*\* 중 6,3\*\*주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주당 \*\*,500원(←@\*\*,300원)으로 조정하여 증여가액 49백만원으로 신고함

# Text < 대표이사 우정훈 증여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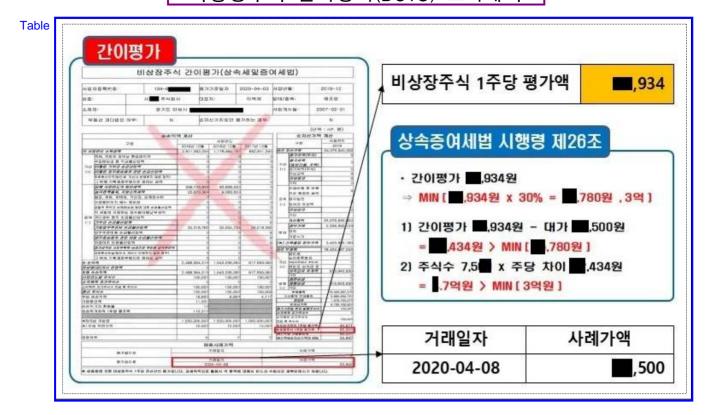
(주, 백만원)

Table

е	증 여 자	수증자	증 여 일	주식수	단가	증 여 가 액 (주식수×단가)
		박口人 (배우자)	'20.6.20.	2,***	@**,500원	49
([	우ㅈㅎ (대표이사)	우人 o (자녀)	'20.6.20.	2,***	@**,500원	49
		우人ㅂ (자녀)	'20. 9. 7.	2,***	@**,500원	49

Text - (간이평가) 당해연도 주식변동내역이 많고,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가액이 Text 49백만원으로 신고된 정황을 통해 주식단가 적정여부에 대해 비상장주식 Text 간이평가(DC1O)로 확인한 결과,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Text < 비상장주식 간이평가(DC1O) 조회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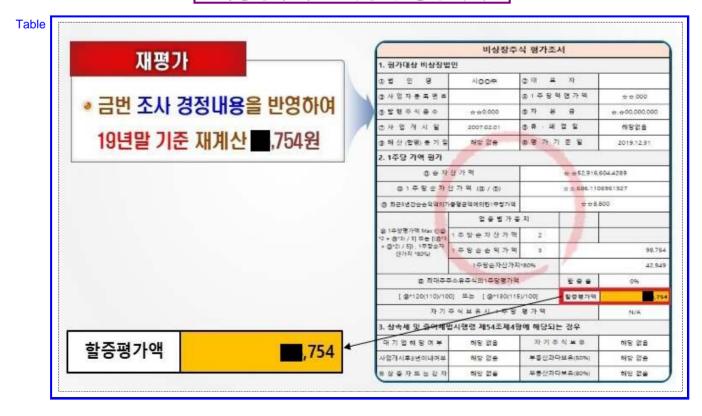


Text ○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금번 조사를 통한 범위확대('19년) 사항을 반영하여

Text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재평가한 결과, 조사법인이

Text 신고서상 주식가액은 조정대상으로 확인되어 경정된 단가로 조정함

Text <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경정내역 >



## Text 나. 조사법인 주장 및 과세논리

- Text (조사법인 주장) 거래단가는 조사법인 개인주주가 '19.7월~9월에 주식 양도시 Text 적용한 거래단가(@\*\*,300)를 참고하여 이를 시가로 본 것으로 문제점 없음
- Text **(조사팀 과세논리)** '19.7~19.9월 개인주주들 양도 거래단가 @\*\*,300원은 ㈜서■

  Text 오토△△(1차 벤터)과 우ㅈㅎ(대표이사)의 거래일('20.4.3.)과 6개월 초과된 거래로

  Text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 적정

  Text 여부는 법령, 판례 등을 근거한 판단사항임

### Text 다. 핵심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관련법령 및 판례) 우ㅈㅎ(대표이사)와 가족들간의 거래(2번 거래)는 상증세 Text 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시가 적정 여부 검토대상이나, 1차 벤더사와 대표이사 Text 우ㅈㅎ과의 거래(1번 거래)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Text - 다만,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해서도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해 ①정당한 Text 사유 없이 ②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조정가능 대상 Text 으로 법령상 확인함

Text ① (정당한 사유 유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정당한 사유 유무는 주식 양수의 Text 경위, 거래가액 결정과정, 이익분여 개연성 여부 등으로 판단

### Table 판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대법원 2013두5081)

①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②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Text - ㈜서■오토△△의 모회사인 서■그룹은 유ㅇ스 회장의 배임사건(주식관련)에 Text 대한 무혐의 판결('16년) 이후 모든 투자회사에 대해 지분정리 방침을 세웠으며, Text 조사법인 주식도 이 방침에 따라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Text 직접 거래 당사자로 조사법인 매출 증가(현대차 납품량 증가로 조사법인의 매출액

Text 증가)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합리적인 경제인

Text 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Text 객관적인 정황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함

Text \* 조사법인 매출액(연도): 423억원('19) → 759억원('20) → 1,165억원('21)

Text ② (시가판단) 해당거래에 적용할 매매사례가액 및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Text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계산

Text - (보충적평가액) 금번 조사 경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사법인의 '19년말 기준

Text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은 주식거래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Text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1번 거래와 2번 거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임

# Table 판례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6두17055(2007.1.11.)

시가라 함은 ①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 여부, ②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 및 자유의사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Text ○ **(증여세)** 증여 및 양도시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Text 같으며 대표이사 우ㅈㅎ '20년 증여세 \*0백만원 및 자녀 증여세 \*8백만원 경정함

# Text < (1번 거래) 비특수관계자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

(주. 백만원)

Table	양수자	양수주식수	주당 시가 (주당 지급대가)	증여재산가액*	증 여 세
	우ㅈㅎ	7,5**	**,*54원 (**,300원)	*67	*0

Text \* 비특수관계자 증여에 대한 공제(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3억) 적용

## Text < (2번 거래) 특수관계자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

(주. 백만원)

Table	수증자	수증자 증여주식수		증여재산가액	증 여 세
	합 계	6,***	_	*14	*8
	배 우 자*	2,***		_	_
	자녀1	2,***	**,*54원	*57	*9
	자녀2	2,***		*57	*9

Text \* 배우자 공제(6억)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 없음

### Text 라. 명백한 과세근거로 성공적 처분유지

「ext ○ 조사항목에 대한 세법 해석자료, 심판례 등 합리적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Text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힘씀

Text -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Text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 내 현금 납부함

# 적출④

### ❖ 개발비 (항목코드: 10901)

#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 즉시상각의제 시부인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법인은 자체 연구조직을 통해 자동차용 조명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

Text 활동을 조사대상 기간을 포함 현재까지 수행중임에도 '20년 이후 무형자산

Text (개발비)의 자산화 내역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함

# Text < 재무상태표 상 무형자산 내역 >

(백마워)

Table

е	구 분	총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소프트웨어	*,*05	_	*32	*47	*83	*,*43
	개발비	*62	*62	_	_	_	_

# Text < 손익계산서 상 경상개발비 내역 >

(백만원)

Table

е	구 분	총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경상개발비	*,*91	*,*08	*,*52	*,*77	*,*37	*,*17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 '21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1항 제2호 Text 바목의 감가상각대상 중 '개발비' 개정취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개발비 Text 인식 요건을 엄격한 기업회계기준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

Table	개정전	개정후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공정·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ul><li>□ 감가상각대상 개발비</li><li>○ (좌동)</li><li>○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li></ul>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을 충족한 것

Text - 개정내용은 회사가 상황에 따라 무형자산을 임의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조정하는

Text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령을 명확화한 것으로 자산 인식요건만 확인되면 개정

Text 여부와 상관없이 '21년 이전도 자산화 가능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기술개발) 조사법인은 특허 11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등록 2건을 보유중 Text ○로 지속적으로 자동차 조명관련 기술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며

Text - 기술연구부서의 핵심인물에 대한 회사 내 업무기능과 역할, 근속 연수 등을

Text 고려하여 현재 기술연구소 이사(조사기간에는 기술연구소 팀장으로 재직)을 대상

Text 으로 인터뷰하고 사실관계 등을 문서화함

Text -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Text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기재하고 있음

### Text < 감사보고서상 무형자산 인식 기준 >

Table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Text O (회계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요건 Text 충족여부를 검토하고자 조사청이 인터뷰 및 예치한 내용을 근거로 검토

Text - 개발비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개발단계의 지출로서 Text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효익을 Text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시 Text 에서도 조사법인의 설계 연구활동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 Text <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해당 사례 >

**Table** 

- ∨생산전 또는 사용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u>설계하는 활동</u>
- ∨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u>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u>
-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하여 <u>최종적</u> 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Text - 조사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함

### Text <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 >

Table

#### ①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입증가능 :

기술부서에서 수행하는 개발활동은 대부분 자동차 램프(조명)관련 설계 용역으로 이는 <u>기술적으로 실제 실현</u>되어 <u>제품화되고 판매</u>하려는 <u>목적</u>으로 개발하므로 실현 가능성 입증가능함

#### ②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제시 :

고객사(현□, 기■)의 요구에 따라 설계하는 개발활동은 조사법인이 판매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입찰이 완료된 상태로 판매능력도 갖춘 상태임

③ 미래경제적효익 창출 가능성, 시장의 존재 유무 등 :

조사법인의 설계 개발활동은 제조사별, 차종별로 구분이 되겠지만 한번 개발되어 제품화가 된다면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해당 고객사도 계속 존재함

④ 지출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설계 후 제품화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여 고객사에게 청구하므로 원가는 측정가능함

### Text 나. 조사법인 주장 및 과세논리

Text O (조사법인 주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 중 무엇보다 '지출원가의 Text 신뢰성 있는 측정'(자산별 구분)이 불가하고, 외부감사인도 개발비 자산화를 Text 인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자산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Text ○ **(조사팀 과세논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맞는 개발비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Text 회계감사와는 상관없이 적용가능하며, 지출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자산별 구분)은

Text 이래와 같이 조사법인이 전표상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표상 기재된 'RJ1'과 같이

Text 알수 없는 항목은 조사법인의 미협조로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여 일시보관 진행

### Text < 조사법인의 전표상 연구비 내역 >

**Table** ¥ 01432 2020/01/09 ES90000-01 평가(RJ1 21MY. 480,000 680,000 01432 2020/01/09 ES90000-01 평가(RJ1 21MY\_ 480,000 0 160,000 2020/01/14 ES95400-10 평가(**SP2i** 도어) 01432 000,000 0 .991.000 02210 2020/01/31 RG3-IP 양산■ .000,000 0 613,000 02210 2020/01/31 CN7-IP 양산 000:000 0 .613.000 2020/01/31 QY-DR EO 00111 200,000 ,813,000

### Text 다. 핵심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내부자료 확보) 대표자, 회계담당자 및 구매부서 담당자를 일시보관한 결과,

Text 회계담당자인 경영지원 이사실 컴퓨터에서 차종 등을 표기하여 구분한 파일이

Text 확인되어,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여 지출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Text 조사법인 주장의 반박자료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조사법인도 수긍함

# Text < 조사법인의 차종 분류표 >

Table

	*내부자	료(경영지원 이	사실)	* 조	사법인의 전표상 '연구비' 내역
	국가 차종 차명 RJ K9		차명	날짜	적요란
			K9	2020/01/	/09 ES90000-01 평가( <u>RJ1</u> 21MY_CONSOLE TRAY) 1 X 480,000
		RJ	K9	2020/01/	709 ES90000-01 평가( <u>RJ1</u> 21MY_DR P HANDLE) 1 X 480,000
	중국	SP2Ic	셀토스	2020/01/	'14 ES95400-10 평가( <b>SP2i</b> 도어) 1 X 18,000,000
		RG3	G80	2020/01/	'31 <b>RG3</b> -IP 양산 (노벰 LHD/RHD) 검사구 잔금
	CN7 인도 QY		아반떼	2020/01/	/31 <u>CN7</u> -IP 양산 검사구 잔금
			쏘넷	2020/01/	/31 <u>QY</u> -DR EO 목업비 일시불 외 2건

Text - (적출금액) 기업회계상 무형자산(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19~'23년

Text 당기비용 처리한 \*,069백만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내용연수(5년)에 따라

Text /20~'23년감가상각비 \*,112백만원 손금산입(유보)함

# Text < 조사법인의 개발비 및 감가상각 추인대상 >

(백마워)

Table

le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개발비(자산)	*,*69	*,*78	*,*91	*,*12	*,*48	*,*40
	감가상각(추인)	△*,*12	_	△*76	△*94	△*56	△*86
	합 계	*,*58	*78	*16	*18	*92	△*46

# Text 라. 분명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기술부서 연구원 및 회계팀 인터뷰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

Text 논리를 제시하면서 조사법인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일시

Text 보관을 통해 수집하여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과세 합리성의 타당한

Text 근거로 활용하면서,

Text 과세처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세법적용 안내가 더

Text 큰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조사법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Text 설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적출**⑤

# ❖ 해외매출채권 지연 (항목코드: 18004)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 정상가격 조정

### Text **1. 조사착**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 SI◇◇◇ (TIANJIN) AUTOMOTIVE(이하 '시◇◇천진')

Text SI◇◇◇ INTEL (INDIA)(이하 '시◇◇인디아')에 대한 매출추이에 따른 매출채

Text 권 변동없이 장기 미회수된다는 사실에 착안함

Text < 시◇◇천진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채권 잔액 >

(백만원)

Table 분 '20년 '22년 '23년 구 '19년 '21년 매 출 액 \*29 \*89 \*24 \*14 매출채권 잔액 \*28 \*99 \*93 \*81

Text < 시◇◇인디아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채권 잔액 >

(백만원)

**Table** '23년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매 출 액 \*30 \*33 \*14 \*45 \*,\*31 매출채권 잔액 \*92 \*87 \*81 \*93 \*04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O (당좌대출이자율)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으로 우선 순위에 Text 있는 무디스방법(국조법 시행령 제11조 2항 2호)은 조사법인의 국외특수 Text 관계인 요건 불비\*하여, 후순위에 해당하는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함

Text \* 신규법인 적용불가 : 시◇◇천진은 '20년 설립된 신규법인임

Text \* 재무자료 미확인 : 시◇◇인디아는 자매회사로 재무자료 확인이 불가한 상태

### Table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 3.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평균회수기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매출액, 매출채권으로 추출한 매출채권

Text 회전율을 바탕으로 연도별 평균회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산출함

# Text < 시◇◇천진 평균회수기간 >

(일, 백만원)

Table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매 출 액	_	*89	*29	*24	*14
	매 출 채 권	_	*81	*28	*99	*93
	매출채권회전율	_	*40	*05	*14	*47
	평균회수기간	_	*77	*64	*72	*,*00

### Text < 시◇◇인디아 연도별 매출채권 잔액 >

(백마원)

						· · · · · · · · · · · · · · · · · · ·
Table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매 출 액	*30	*14	*33	*45	*,*31
	매 출 채 권	*87	*92	*81	*93	*04
	매출채권회전율*	*87	*39	*87	*37	*49
	평균회수기간**	*35	*51	*24	*26	*5

Text \*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기초매출채권 + 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 = 365/매출채권회전율

Text - (통상회수기간) 통상적인 회수기간은 비특수관계인과의 결제조건 등 대금

Text 회수기일로 재무담당자인 경영지원실 이규환 이사 컴퓨터에서 예치한 파일

Text 에서 아래 자료와 같이 대부분 90일로 확인됨

### Text < (예치자료) 비특수관계인과의 대금 회수기일 >

le ※ 고객사 결제조건				
업체명	대금결제조건	결제 구분	어음일수	채권 회수 기간
ㄷㄱ실업	30일	어 음	60일	90욀
ㅁㄷ기업	30일	어음	60일	90일
스 ㅎ이 엔지	30일	어음	60일	91일
<b>⊂</b> ⊼	30일	어 음	60일	90일
80	30일	어 음	60일	90일
⊂⊙PLT	30일	어 음	60일	90일
ㄷᄉ티씨에스	30일	어 음	60일	90일
ㄱ ㅅ기업	30일	어음	60일	90일

Text ○ (조정대상) 비특수관계인과는 달리 국외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Text 행위는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 금전거래로 정상이자 수취대상 국제거래에

Text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이자율 조정대상임

# Text < 국외특수<u>관계인별 지연회수 여부 ></u>

(백만원)

							(   L L )
Table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시◇◇	①회수기간	_	*77	*65	*72	*65
	천 진	지연일수 (① -90일)	_	*7	*75	*82	*75
	시�� ①회수기간		*35	*66	*65	*26	*5
	인디아 지연일수(①-90일)		*45	*76	*75	*36	*5
	지 (	연회수 여부	여	여	여	여	여

Text ○ (**적출금액**)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라 '20~'23년 시◇◇천진 \*9백만원 익금산입

# Text < 매출채권 지연회수 정상이자 조정금액 >

(백만원)

								( - 1 - 1 - 1 - 1
Table	구	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	매출채권	*,*01	_	*81	*28	*99	*93
	시 ◇◇ 천 진	지연일수	*19	_	*7	*75	*82	*75
		지연이자	*9	_	*3	*1	*1	*4
	^ ^	매출채권	*,*57	*87	*92	*81	*93	*04
	시 $\diamondsuit \diamondsuit$ 인 디 아	지연일수	*37	*45	*76	*75	*36	*5
		지연이자	*7	*5	*3	*3	*5	*1
	정상이자 조정금액		*17	*5	*7	*4	*6	*5

Text ※ 정상이자 조정금액 = [매출채권 × (지연일수 = 회수기간 - 90일 )/365] × 4.6%

# Text 나. 조사법인 주장 및 과세논리

Text (조사법인 주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되어 지연회수된 해외

Text 대출채권에 대한 세법상 처분을 전혀 모른 상태로 국제거래에 대한 지식이

Text 전무한 상태로 신고상 누락을 인정함

Text ( **조사팀 과세논리**)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외매출채권을
Text 지연회수함에 따라 통상적인 회수기일을 초과하는 지연일수에 대해 인정
Text 이자 익금산입 결정

# Text 다. 합리적인 과세근거로 성공적 처분유지

Text 이 해외매출채권 지연에 따른 정상이자 조정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한 Text 과세논리를 제시하여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바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Text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적출**⑥

### ❖ 기술사용료 (항목코드: 18004)

# 국외특수관계인 기술사용료 미수취 정상가격 조정

#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원천기술) 조사법인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활동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기술을 Text 취득하고 관련 인증, 특허, 신용실안 및 독자적인 생산라인을 보유 중임

Text - 조사법인은 특허 11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등록 2건을 등록하였으며, Text 연구관리시설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수행 중임

### Text < 조사법인 보유 특허 등 내역 >

**Table** 



Text O (현지법인) 조사법인은 '19년 중국, '23년 인도에 생산공장 목적으로 현지 Text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현지법인명세서 상 확인됨

### Text <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Special

al	법 인 명	설립일	업종	주주
	중국 현지법인	'19. 10. 8.	제조/자동차부품	조사법인 100% 출자
	인도 현지법인	'23. 4.3.	제조/자동차부품	조사법인 100% 출자

Text - 인터뷰를 통해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단순 임·가공 용역이

Text 아닌 생산공장에서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 Text < 조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 생산공정 >

Table



Text - 조사법인 예치 시 확보한, 해외 현지법인들의 사진을 확보함으로 조사 Text 법인과 동일한 생산공정이 확인된 점, 수출통관자료의 HS코드를 통해 Text 제품에 필요 부품 등을 조사법인으로부터 조달 받는 것에 착안 함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 (정상가격) 조사법인의 100% 자회사인 중국 및 인도 법인으로부터 기술
Text 사용료 대가를 수취하고 있지 않아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 대상임

Table

###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 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기술 사용료율) 조사법인과 유사한 사업기능 및 산업기술을 갖고 있는

Text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 해외상용 DB, Tpcatalyst를 활용함

# Text <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 >

Table

е	번호	제외기준	제 외	선정
	최초	_	_	**,*60
	1	US-SIC 35, commercial-machinery and computer equipment US-SIC 36, Electronic and other electrical equipment US-SIC 3641, Electric lamp bulbs and tubes	**,*73	*,*87
	2 Agreement Type: Manufacturing / Process Intangible		*76	*,*11
	3	Excution date : 2000.01.01.부터 2018.12.31.까지	*16	*95
	4	KtMine Classification: Industrial Equipment and Machinery	*72	*23

# Text < 비교대상업체 사분위 값 >

Table	구	분	선정
	비끄디사어케	상위 사분위 값	5%
	비교대상업체 기술 로열티율	중위값	3%
	기호 포크니컬	하위 사분위 값	2.3%

Text ○ (소득조정금액) '20~'23년 해외특수관계인 제3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Text \*74백만원 익금산입(임시유보)을 정상가격 조정 대상 소득금액으로 산출

# Text 나. 조사법인 주장 및 과세논리

Text ○ **(조사법인 주장)** 조사법인과 재화 대가에 사용료 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

Text 않고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의거해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으며, 재화

Text 대가에 사용료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거래의 형식이 달라졌을 뿐 사용료 소득임

### Text 다. 명백한 과세근거로 성공적 처분유지

Text ○ 조사팀은 명백한 과세근거를 가지고 과세하였고, 조사법인은 이를 인정하고

Text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Text 현금 납부함

적출⑦

### ❖ 무환수출 (항목코드: 11307)

### 국외특수관계인 무환수출 대가 미수취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무환수출) 조사법인이 매년 해외에 수출한 금액 중 불량품 대체 및 견본품

Text 제공의 사유로 무상으로 해외특수관계인에게 폴리카보네이드 등의 제품을

Text 제공하고 잡손실로 계상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

# Text < 특수관계인 무상수출(GN) 통관 내역 >

(백마워)

Table

e	구 분	총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중국 현지법인	*19		*1	*1	*17
	인도 현지법인	*83	_	_	_	*83

Text - 조사법인이 무상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수출통관하고 있는 품목은 동일

Text 상품으로 중국 현지법인에 매년 동일 품목을 견본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고,

Text 인도법인이 설립되자마자 중국법인과 동일한 상품을 제공한 점에 착안함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 조사법인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 제공 목적이 아닌 해외 특수관계인을위해 Text 제화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Text 거래에 해당함

### Table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Table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4 [다른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1조와「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인터뷰) 연도별 수출통관자료의 무환수출내역 HS CODE를 추출하여 해외 Text 판매 담당자 인터뷰 한 결과, 견본품의 품목이 조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인 Text 에게 매출하는 품목과 다르지 않고,

Text - 실제 견본으로 제공된 소액 제품 외, 동일 품목으로 수천만원의 부품이 무환 Text 으로 해외특수관계인에게만 사실을 확인함

Text ○ (**적출금액**) '20~'23년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라 \*05백만원 익금산입(기타소득)

### Text 나. 조사법인 주장 및 과세논리

Text ○ (조사법인 주장) 국제거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국외특수관계인이 Text 대로 신설되었을 때 초기 지원목적으로 동 대가의 미수취를 인정함

Text (조사팀 과세논리)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특수관계인과 지원목적으로 매년

Text 동일 품목에 대해 수천만원의 금액을 견본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Text 사업 초기인 해외특수관계인 지원 목적으로 재화를 무상제공한 것으로 판단

### Text 다. 합리적인 과세근거로 성공적 처분유지

Text 이 해외특수관계인 재화 무상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논리를 제시

Text 하여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바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Text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적출8

### ❖ 감가상각비 (항목코드: 10901)

# 소모품비 중 자본적지출 즉시상각의제 시부인

###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소모품비) 조사법인은 부품 제조업에 사용하는 공구와 기구 중 지그\* 취득

Text 금액에 대하여, 동일 품목임에도 일부는 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하는 한편

Text 일부는 소모품비로 당기 비용 인식한다는 점에서 착안함

Text \* 지그 : 제조 공정에서 부품을 고정하거나 위치를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 Text < 조사법인의 당기비용 계상액 >

(백만원)

 Table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소모품비
 \*75
 \*46
 \*72
 \*66
 \*,\*25

### <sup>Text</sup>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 (즉시상각의제) 당기 소모품비로 계상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Text 즉시상각의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봄

#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Table

####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현장실사) 조사법인의 당기 소모품비 내역 중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에

Text 해당하는 지그에 대해 감가상각 대상 자산 구분 기준, 사용기간 및 용도

Text 확인을 위해 부품 제조 공장을 실사함

Text < (조사기간 공장방문) 부품 '지그' 현장 사진 >





- Text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자산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지그와 당기 소모품비로

  Text 계상한 지그의 용도는 동일하며, 자산에 대한 구분 기준 없이 계상하여

  Text 최소 1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Text (자본적지출) 해당 자산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 및 개조 비용도 당기
  Text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상각의제 과세 요건 충족함
- Text (적출금액) 즉시상각의제에 따라 '19~'23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9백만원

  Text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함

Text < 즉시상각의제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소모품비 내역 >

(백만원)

Table

구 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① 자 본 적 지 출 액	*,*50	*7	*24	*90	*85	*94
②감가상각비 추인액	△*31	_	△ *3	△ ∗9	△ *10	△ *49
③소모품비 순부인액 (①-②)	*19	*7	*11	*31	*75	*45

### Text 나. 조사법인 주장 및 과세논리

- Text (조사법인 주장) 지그는 판매용 부품 제조 시 기계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Text 자산으로, 부품이 투입되는 특정 제품 출시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Text 지그 취득 당시에는 내용연수를 알 수 없어 소모품비로 계상한다고 주장
- Text (조사팀 과세논리) 현장 실사 시 대부분의 지그를 최소 1년 이상 사용하고

  Text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취득 당시 내용연수 구분 기준이 없는 경우

  Text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되어 폐기 시 손금 처리하는

  Text 것으로 주장

## Text 라. 분명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 논리를 제시

Text 하여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바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Text 조사 종결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적출**9

# ❖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항목코드: 11501)

###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부당세액공제 적출

#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O 조사법인은 기술연구부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20년까지만 연구·인력
Text 개발비 세액공제 받고 그 이후로는 세액공제 신고 없음

Text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역 >

(명. 백만원)

**Table** 

le	구	분	합 계	'19	9년	'20	)년	'21	년	'22년	<u> </u>
	인원	인건비	*4 *69	*6	*85	*8	*84	-	_	-	_
	재 5	료 비	*()4		*04		_		_		_
	세 액	공 제	*56	5	*85		*1		_		_

Text - 조사법인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 및 공제요건에 대한

Text 해석에 대한 오류로 인하여 부적정한 대상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Text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착안함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특법 시행령 제9조에서 열거된
Text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 대상임

### Table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Table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 Text (현장방문)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인력
  - Text 개발비 요건을 확인하고자, 조사법인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술연구소를
  - Text 방문하여 연구소장 인터뷰 및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을 직접 확인
- Text **(연구자료)** 조사대상연도 당시 연구를 진행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연구개발
  Text 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연구자료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함

# Text 나. 납세자 주장 및 과세논리

- Text (납세자 주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승인받은 R&D센터에서 실제 Text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 Text 공제 대상에 해당함
- Text (조사팀 과세논리)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20년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는
  - Text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요건을
  - Text 충족해야 세액공제 대상이나, 조사법인은 '20년 당시 연구 관련 증거서류를
  - Text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Text 다. 핵심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 Text **(조특법 신설)** 조사기간 내 지속적으로 연구노트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 Text 단순 연구수행 사실만 확인되는 자료만 제출하였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 Text 제9조의 공제요건('20년부터 작성의무 부여 시행)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Text 하여 '20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백만원 부인함

# Text 라. 분명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O 법령에 명시된 세액공제 요건을 제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Text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적출⑩

### ❖ 세액공제 (항목코드: 11505)

###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부당세액공제 적출

### Text **1. 조사착**아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법인은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Text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Text <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내역 >

(백만원)

Table

е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고 용 증 대	*,*72	_	*1	*57	**0	*34
	사회보험료	13	_	*4	*5	*3	*1
	합 계	*,*92	-	*25	*53	**5	*98

Text - 조사법인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원의 Text 승계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음에 착안함

### <sup>Text</sup>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 (상시근로자)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Text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증감에 미반영함

#### Table

###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 ③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지급명세서)** 특수관계법인 시◇◇이노◆◆◆(유)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를

Text 확인하고자 조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대사하고,

Text 조사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함

Text ○ (근로자승계) '19~'20년 조사법인의 근로자 11명이 특수관계법인으로 이동하여

Text 근무하였으며, '22년 조사법인으로 다시 이동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Text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확인함

# Text < 조사법인 상시근로자 승계 내역 >

(백만원)

Table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승 계 근 로 자	_	△10	△1		11	

# Text 나. 조사법인 주장 및 과세논리

Text O (조사법인 주장) 특수관계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

Text 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고용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Text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임

Text ○ **(조사팀 과세논리)** 특수관계법인에서 조사법인으로 근로자 이동은 근로자

Text 승계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볼 수 없음

# Text 다. 핵심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일시보관)** 일시보관 자료 중 조사법인 내부 조직도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

Text 이동한 근로자 현ㅈㅎ, 백ㅅㅎ, 정ㅈㅇ 등이 확인됨

# Text < '21년 특수관계법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Table

ole	귀속년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시작일자	근무종료일자
		백人ㅎ	8806**-****	2021-06-21	2021-12-31
	'21년	정ㅈㅇ	9409**-****	2021-07-01	2021-12-31
		현ㅈㅎ	9402**-****	2021-01-01	2021-12-31

# Text < '21년말 기준 조사법인 조직도 >

**Table** 

신차개발팀		원가관리
박ㅎㄱ 수석	경리/회계팀	차ㅎㅈ 과장
김ㅊㄱ 선임	오ㄱㅇ 차장	정ㅈㅇ 사원
박ㅎㅇ 선임	9,000 PM - PERSONAL PROPERTY - PERSONAL PROPER	
한ㅈㅎ 주임	김ㅌㅇ 계장	
서ㄷㅇ 주임	백스ㅎ 계장	해외영업팀
현ㅈㅎ 연구원		차ㅎㅈ 과장(겸)

Text ○ **(적출금액)** 조사법인은 '19년~'20년 특수관계법인 시◇◇이노◆◆◆(유)으로

Text 직원을 승계시켰<u>으며, 이후 '22년 9월 승계한 11명의 직원을 '22~'23년</u>

Text 상시근로자 수에 반영하여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 과다 공제함

Text - 조사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재계산하여 '20~'23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6백만원(△\*5백만원) 부인함

# Text < 승계 관련 상시근로자 수 >

(명)

Table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상시	승계시킴	*.75	*.92	*.83	_	_	_
	근로자	승계함	*.66	_	_	_	*.66	**.00

# Text <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른 추징세액 >

(명)

Table

е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4	_	△*1	△*6	*5	*5
	사회보험료세액공제	*8	_	△*6	△*2	*8	*8

Text \* '19년의 경우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없음

# Text 라. 분명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타당한 과세논리 제시하여 조사법인은 특수관계

Text 법인으로부터 근로자 승계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Text 현금 납부함